

인천지방법원 2020. 8. 20 선고 2019가단2946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1. 10. 20 선고 2020나70246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0. 8. 20 선고 2019가단29463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0. 7. 23

판결 선고 2020. 8. 20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00,593,1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가. 원고는 2014. 4.경 부동산 중개업자 C으로부터 인천 옹진군 D 및 지상 3층 주 택(이하 토지 및 주택을 통틀어 '이 사건 주택'이라고 한다) 매매건에 관하여 원고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를 대여해주었고, 원고 명의의 2014. 4. 17.자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직접 E에게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전에 C과 약속하고 형식상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,이후 원고와 E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등기가 경료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합계 100,593,130원이 부과되었다.

다. 결국 피고는 실제로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,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0,593,130원은 원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00,593,130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판 단

갑1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2014 . 6. 5.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도인은피고, 매수인은 원고,매매대금은 3억 6,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,2014. 6. 12.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도인은 원고, 매수인은 E, 매매대금은 5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, 이 사건 주택의 매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합계 100,593,1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.

그러나,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,피고가 E로부터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원·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어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00,593,130원 상당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(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,원고가 법무사

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고,당시 위 세금 문제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).

3.결 론

그렇다면,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문주희